

商品分類에 관한 一考察

— 특히 垂直的 貿易商品分類를 中心으로 —

韓 義 泳

.....<目 次>.....

1. 商品分類의 意義와 水平的 分類
2. 貿易商品分類와 垂直的 分類
 1. 國內標準商品分類
 2. 國際標準商品分類
3. 結 言

1. 商品分類의 意義와 水平的 分類

貿易商品論에서 그 理論과 實際가 宪明되기 위해서는 우선 貿易商品의 分類부터 시작되어야 함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必須의이다. 왜냐하면 貿易商品論의 對象인 貿易商品을 體系的으로 分類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理論과 實際로써의 獨自의인 研究方法과 戰略을 確立하기 위한 不可缺한 條件이기 때문이다. 一般的으로 商品의 分類는 理論的으로는 그 對象範圍을 밝힐과 동시에 그 内部의 體系를 確立시킴에 貢獻하게 되며 分類에 依한 各商品의 特質을 宪明하게 됨으로서 實際的으로는 企業의 貿易마아케팅活動을 위한 貿易商品戰略을 樹立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現實的으로는 商品 種類만도 約 200萬 내지 300萬種에 達하리라고 推測¹⁾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모든 商品에 適用될 分類基準을 어떻게 設定하는가에서부터 별 써 研究上의 苦悶이 시작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 세상의 無數한 商品을 하나도 남김없이捕捉·研究한다는 것은 能力的으로나 時間的으로도 限界가 있게 되어 자연 어떤 基準에 依한 類型別로 分類해서 어느 特定商品이나 代表商品만에 대한 宪明이 있게 됨이 보통이다.

筆者：서울大學校 經營大學 附設 韓國經營研究所 研究員。서울大學校 經營大學 副教授

* 本稿는 文教部研究助成費에 依한 研究論文임。

1) G. Grundke. *Technische Gemeinschaft*, 8 (1960), S. 446.

그러나 類型別로 分類된 그러한 特定商品 내지 代表商品이 어떤 統一的인 基準에 依해서 生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分類基準設定의 如何에 따라 이룩된 그 究明自體가 점점 多岐 多樣해지고만 있다는 것이 차라리 오늘의 現實이다. 그런 故로 商品分類에 關한 限 그 統一的인 體系化가 檢索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相當期間의 難痛이 必然的일 것은 물론이다.

어쨌든 商品分類를 가령 慣用分類(水平的分類)와 制度分類(垂直的分類)로 大別한다면 前者의 경우만 하더라도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多樣多種이다. 다만 慣用分類의 경우에는 어떤 統一의이며 合理的인 基準에 依해서 分類되었다고 看做하기 보다도 수 많은 商品 가운데서 어떠한 常識性을 바탕으로 한 共通性을 索出·整理함으로서 區分된 分類라 봄이妥當하다. 즉 水平的인 階層으로 分類된 特定商品相互間의 基準은 明確한 限界가 그어진 바 없이 다만 常識의으로 쓰여지는 思考方式을 基盤으로 해서 이룩된 分類에 不過한 것이다. 이를테면 비근한 例를 들어 商品을 必須品과 奢侈品으로 區分한다고 할 때 兩者的 判別基準은 主觀·客觀의 差異에만 依해도 크게 混同되기 일쑤이다.

따라서 이러한 分類의 基準은 당초부터 限定의이며 實務的인 意味를 지닌 것으로서 主로 마아케팅의 立場에서 市場에서의 商品取扱上 必要로 生成하게 된 慣用의 分類라 할 수 있다. 이러한 慣用分類는 결국 市場을 中心으로 해서 去來되는 商品을 그 對象으로 했다고 해서 一名「市場論의 分類」²⁾라고도 불리워지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主要하다고 느껴지는 몇 가지만을 羅列해봐도 다음과 같아진다.³⁾

- (1) 產業類別에 따라 : 第1次產品, 第2次產品, 第3次產品
- (2) 產業階層에 따라 : 農產物, 農產物, 林產物, 水產物, 鑛產物, 工產品
- (3) 集約度에 따라 : 勞動集約商品, 技術集約商品, 資本集約商品
- (4) 加工狀態에 따라 : 原料, 材料, 半製品, 部分品, 完製品, 古品, 廢品
- (5) 產出源에 따라 : 植物性商品, 動物性商品, 鑛物性商品
- (6) 形態에 따라 : 固體商品, 流動體商品, 液體商品, 氣體商品, 粉體商品, 粒體商品
- (7) 用途에 따라 : 產業用商品, 家庭用商品
- (8) 目的에 따라 : 食料品, 衣料品, 住料品
- (9) 地域에 따라 : 地方商品, 全國商品, 地域商品
- (10) 貿易에 따라 : 輸出商品, 輸入商品
- (11) 使用期間에 따라 : 耐久財商品, 消耗財商品, 消費財商品

2) 三谷 茂, 理論商品學序說, 廣文社, 1961, p. 152.

3) C. Kapferer & W.K.A. Disch, *Absatzwirtschaftliche Produktpolitik, Köln und Opladen*, 1967, SS. 17~23.

(12) 購買慣習에 따라 : 便宜品, 選貨品, 專門品

(13) 商標에 따라 : 有標商品, 無標商品

(14) 競爭程度에 따라 : 競爭商品, 寡占商品, 獨占商品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市場에서의 商品取扱上 必要로 生成한 慣用的인 分類라기 보다도商品의 供給者的인 立場에서 生產側面이 더욱 重視된 듯한 分類도 包含되어진다고 믿어지기 때문에(이를테면 產業의 類別 내지 階層, 集約度, 加工狀態등에 따른 分類는 主로 生產側面에서의 分類라 看做됨이 妥當) 마아케팅의 一般論的인 立場에서는 되도록 商品의 流通내지 消費와 密接한 聯關이 있는 商品分類가 驅使되어 집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도 특히 마아케팅의 觀點에서만에 立脚해서 試圖된 다음의 表와 같은 「市場論的分類」의 總括模形은 대단히 有意義한 바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市場論的分類(慣用的分類)는 그 모두가前述한대로 常識性을 바탕으로 한共通性을 索出・整理함으로서 이룩된 水平的인 分類이기 때문에 제各己 分類된 商品相互間基準의 限界가 明確하지 않고, 때에 따라 重複되는 경우도 許多한 것이 通例이다. 이를테면 商品이 有標商品과 無標商品으로 區分되었을 때 같은 品種의 商品이라도 商標의 有無에 따라 그「카테고리」가 달라지며 食料品, 衣料品, 住料品으로 區分된 商品의 경우 化學纖維는 一般的인 用途에서 볼 때 당연히 衣料部門에 归屬되어져야 하는데도 特殊의인 用途의 面에서나 製造技術의 角度에서 볼 때 住料品(이를테면 住宅用「커튼」)이나 化學工業製品(住料品)으로 所屬되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그 한 例이다.

2. 貿易商品分類와 垂直的 分類

商品의 分類自體가 이령듯 常識的인 基準을 바탕으로 한 重複된 것이어서는 전혀 體系的인 商品研究가 이룩될 까닭은 없다. 왜냐하면 商品의 分類體系가 理論的으로 完全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同一한 商品이 하나의 體系中 두개 以上的 分類部門에 그 얼굴을 내 밀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마치 動物學이나 植物學에서와 같은 한 치의 重複도 間隔도 許諾하지 않는 그런 體系的인 分類야말로 사실 商品論에서 導入되어져야 할 對象인 것이다. 다만 『抽象的 法則의 樹立을 最終目標로 하는 動・植物學과 같은 自然科學이면 모르되 個個의 商品個性 내지 價値와, 그 使用目的 내지 用途를 重點的이며 個別的으로 追求하는 것을 本義로하는 商品學이나 마아케팅論(의 商品別研究)에 있어서는 이러한 沒價值的인 分類는 無意味하다.』⁴⁾는 憂慮가

4) 石井賴三・島田記史雄, 商品學, 青林書院新社, 1965, p. 20.

<表 1> 市場論的分類

		商品					分類				
		地域別市場分類(地域別市場分類에 따른商品分類)					分類				
地域別市場(地域性)		國際商品	外國市場商品	共通商品	特產商品	故國商品(國內)	a 貿易商品	b 商品	c (國商品)	d (a+b+c+d)	e 國內商品(e)
地 域 別 市 場	商 品	國內市場商品	國內市場商品	輸入共通商品	特產商品	故國商品(外國)	(a+c) (b+c+e)	(a+d)	(a+b+c+d)	(a+d)	(e)
1	地域市場別分類(地域別市場分類에 따른商品分類)	3	a 標準物取引可能品 (商品未來所上場可能品) b 標準物取引不可能品 (商品去來所上場不可能品)	b 粗製品	b 粗製品	b 完成品	b 粗製品	b 粗製品	b 粗製品	b 粗製品	b 粗製品
	i 完成型性의 產業商品別分類	→ 2豆	d 規性 規格의 規格有無適合	d 規格外品	e 高品位品	e 高品位品	e 高級價品	e 高級價品	e 高級價品	e 高級價品	e 高級價品
	ii 日用商品別分類	特定(個別的)市場(個別性)	a 購買差別 購買價習의	a 最寄買品	b 中價品	c 有無生活必需性의	d 購買品	e 購買品	f 購買品	g 香料品	h 購買品
	iii 用途別商品別分類	iii 用途別商品別分類	d 劇程度 劇程度의	d 既製品	e 即製品	f 即製品	g 即製品	h 即製品	i 購買品	j 購買品	k 購買品
2	配給市場別分類(配給組織別市場分類에 따른商品分類)	3	i 生產者的立場에 따른商品分類 (產業學者立場에 따른商品分類) 例、日本標進商品別大分類	i 伸繼業者立場에 따른商品分類 (賣買論別大分類)	i 伸繼業者立場에 따른商品分類 (賣買論別大分類)	i 伸繼業者立場에 따른商品分類 (賣買論別大分類)	i 直接販賣品	i 直接販賣品	i 直接販賣品	i 直接販賣品	i 直接販賣品
	ii 仲繼商品	ii 仲繼商品	ii 仲繼商品	ii 仲繼商品	ii 仲繼商品	ii 仲繼商品	ii 仲繼商品	ii 仲繼商品	ii 仲繼商品	ii 仲繼商品	ii 仲繼商品
	iii 分銷商品	iii 分銷商品	iii 分銷商品	iii 分銷商品	iii 分銷商品	iii 分銷商品	iii 分銷商品	iii 分銷商品	iii 分銷商品	iii 分銷商品	iii 分銷商品
	分散(最終)市場商	iv 小賣業者的立場에 따른商品分類 (小賣業者立場에 따른商品分類)	v 消費者的立場에 따른商品分類 (消費者的立場에 따른商品分類)	→ 3豆	iv 小賣業者的立場에 따른商品分類 (小賣業者立場에 따른商品分類)	v 消費者的立場에 따른商品分類 (消費者的立場에 따른商品分類)	→ 3豆	iv 小賣業者的立場에 따른商品分類 (小賣業者立場에 따른商品分類)	v 消費者的立場에 따른商品分類 (消費者的立場에 따른商品分類)	iv 小賣業者的立場에 따른商品分類 (小賣業者立場에 따른商品分類)	v 消費者的立場에 따른商品分類 (消費者的立場에 따른商品分類)

資料：三谷茂理論商品學序說，廣文社，1960，p. 225。

있게 된다 하더라도 자극히 分類基準의 限界가 애매한 慣用的(水平的)分類보다는 훨씬 高次의인 것이 바로 垂直的分類이며 이른바 制度分類⁵⁾이다.

그러나 실은 이 垂直的分類(制度的分類, 本質分類)처럼 그 具體化가 까다로운 分類對象도 없으며, 水平的分類(慣用的分類, 應用分類)의 경우처럼 市場을 中心으로 한 市場論的分類가 아직도 體系的으로 浮刻되어진 예는 없다. 이것은 商品學이나 마아케팅論(의 商品別研究)에 있어서의 垂直的分類가 水平分類에 비해 얼마나 어려운 研究作業의 對象인가를 나타내는 端的인 證據이기도 하다. 단지 理論的이거나 學究的인 意味에서가 아니라 實學的이며 制度的인 意味에서 體系化된 垂直的分類라면 그런 類型들의 몇 가지 만은 있게 된다. 특히 國民經濟的인 觀點이나 國際經濟的인 觀點에서 組織的인 活用이나 比較(國內·國際比較)를 하기 위해 國內 내지 國際制度로서 具體化된 分類體系가 그런 類型들의 代表作이다.

이를테면 國民經濟的인 觀點에서 國家나 公共團體에 의해 統計作成上, 政策의 方案과 實施上 혹은 課稅上 必要로 國內制度의으로 導入된 國內流通商品分類나 世界經濟的인 觀點에서 國際聯合이나 其他의 國際機關에 의해 世界經濟統計의 作成과 比較上, 貿易의 促進上 혹은 關稅徵收과 國際比較의 合理化策으로 國際制度의으로 導入된 國際貿易商品分類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垂直的分類는 어디까지나 國內나 國際制度上의 必要로 導入된 商品分類라해서 一名 制度的分類라 일컬어지는 것도 그런 까닭에서이다. 따라서 輸出마아케팅論의 對象인 輸出商品分類에 있어서는 적어도 實學的인 觀點에 立脚하는 限制度의分類라고 일컬어지는 商品分類의 태두리안에서 國際經濟的인 觀點에서 導入된 國際標準商品分類만이 그 對象일 수 밖에는 없어진다.

그런데 國內制度의으로 導入된 垂直商品分類에는 각국에서 獨自의으로 쓰여지는 國內標準商品分類가 있으며 國際制度의으로 導入된 것으로는 각국에서 共通의으로 쓰여지는 標準國際貿易分類(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와 「부atsu」 關稅分類(B.T.N.; Brussel's Tariff Nomenclature)가 代表的이다.

1. 國內標準商品分類

우리나라에서 制度의으로 導入되어 國內流通商品全般에 適用되도록 쓰여지고 있는 垂直的分類에는 1964年 4月 7日字 經濟企劃院 告示 第14號로 制定된 韓國標準商品分類(K.S.C.C;

5) 制度의分類 내지 垂直的分類是 本質分類로, 慣用의分類 내지 水平의分類를 應用分類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石井賴三, 島田記史雄, 商品學, 前揭書, p. 23~28). 어쨌던 水平의分類 내지 慣用의分類가 어디까지나 常識性을 바탕으로 한 基準과 限界에 依한 分類라는 뜻에서 우리말로는 차라리 「區分」이라呼稱해서 垂直的分類 내지 制度의分類의 「分類」와 區別함이 지당할것 같다. 그렇다면 英語의 表現도 後者の 「Classification」에 반해 前者를 「Categorization」이라呼稱해야 매우 合目的의인 것이라는 느낌이다.

Korean Standard Commodity Classification)가 있다.

그 후 2次에 걸쳐 改正되어(1次 1967年, 2次 1971年 改正) 現在에 이르고 있지만, 그 制定目的是 國內外商品去來에 관한 諸般統計作成事業에 有用하도록 만든 商品分類의 基本資料로서 作成되었으며, 그 分類原則은 國際標準貿易分類(SITC)의 勸告에 準하여 韓國의 實情에 適合한 商品分類를 하기 위해 國內에서 流通되는 모든 商品을 總網羅하며 分類番號는 十進法(Decimalclassification)에 依하고 있다.⁶⁾

韓國標準商品分類는 後述하게 될 國際聯合의 國際標準貿易分類(SITC)의 勸告에 準하여 作成된 商品分類이기 때문에 分類原則과 그 內容은 크게 다를 바는 없다. 즉 十進法分類法에 따른 垂直的인 分類體系는 大分類, 中分類, 小分類, 細分類, 細細分類까지 같으며, 6單位分類 以下의 項目와 內容이 若干 다를 뿐이다. 이것은 標準國際貿易分類가 國際的인 貿易去來의 對象이 되는 品目만을 分類・表示하고 있으나 韓國標準商品分類는 貿易去來對象品目뿐만 아니라 國內에서 流通되는 모든 商品을 分類・表示해야 하기 때문이다.

一例로 韓國標準商品分類의 原則은 대략 다음과 같으며, 韓國標準商品分類와 國際標準貿易分類의 各分類單位別項目數를 比較해 보면 다음의 〈表 2〉와 같아진다.

韓國標準商品分類 (KSCC)의 分類原則

- (1) 이 分類는 國際標準貿易(商品)分類(SITC)를 基準으로 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商品生產 및 國內外去來에 관한 統計作成 및 計劃樹立에 適合하도록 細分함으로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國내商品分類와 國際貿易商品分類로 同時に 使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이 分類는 SITC의 基本項目과 一致하고 그 以下單位에 있어서 開發 및 豐想項目을

〈表 2〉

各分類單位別 項目比較表

分類別 單位別	國際標準貿易分類 (SITC)	第1次改正韓國標準商品分類(1967)	第2次改正韓國標準商品分類(1971)
大分類	10	10	10
中分類	56	56	56
小分類	177	177	177
細分類	625(368)	625	625(14)
細細分類	944	2,318	2,350(719)
6單位分類		7,793(7,250)	7,429(5,258)
7單位分類		2,980	10,877
最終單位項目數	①1,312	②10,230	③16,868

* ① $368+944=1,312$

② $7,250+2,980=10,230$

③ $14+719+5,258+10,877=16,868$

6) 經濟企劃院統計調查局, 韓國標準商品分類, 1964, 序言.

7單位까지 細分하였다.

- (3) 이 分類는 原則의으로 十進分類法에 따랐으며 其他 項目은 9로 表示하였다.
(4) 品目에 관한 解釋은 關聯BTN(「부关税」關稅分類)品目에 관한 解說書에 依한다.

2. 國際標準商品分類

第2次世界大戰後 世界的인 輸出마아개팅의 活潑化에 따라 世界貿易量이 急激히 增加함으로써 必然的으로 國際的인 觀點에서의 經濟分析과 商品別貿易資料 및 關稅資料의 國際比較를 容易하게 할 必要가 생기게 되었다. 특히 各國의 貿易去來對象으로 삼는 貿易商品이 各國에 따라 그 名稱과 種類가 相異하고, 規格과 標準에 差等이 있게 되고, 生存樣式과 技術水準에 差異가 생김으로써 貿易商品去來가 複雜해지고, 나아가서는 그러한 貿易商品의 統計集計上解釋과 通關上註釋이 區區雜多해 짐으로서 世界的으로 統一된 商品分類基準이 必要하게 된 것이다. 그러한 必要性에 依해 마련된 代表的인 分類方式이 바로 標準國際分類(SITC)와 「부关税」關稅分類(BTN)이다.

이 兩者는 다 같이 商品別貿易資料 내지 關稅資料의 國際比較를 容易하게 하기 위한 目的에서 作成된 垂直的인 國際商品分類인 점에서는 같으나 그 分類內容上 내지 分類體系上에서는 다르다.

(1) 標準國際貿易(商品)分類(S.I.T.C.;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SITC原典(最初版)은 UN統計分委의 推薦으로 1950年에 UN經濟社會理事會에서 宣布되었으며, 그 後 1960年에 改訂(SITC 改訂版)되었다.

SITC는 國際貿易構造의 變化 및 多樣화로 世界各國, 國際機關 및 機構들의 貿易資料에 대한 正確한 比較의 必要性을 痛感한데서 制定된 것이며, 그 制定으로서 各國의 經濟分析 및 貿易分析과 國際比較가 容易해지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UN經濟社會理事會는 世界貿易의 組織的 分析의 基礎가 되는 이 標準分類는 各國의 統計集計表로 採擇할 것을 勸告하고 經濟分析에 관한 國際條約에의 加入으로 作成과 發表에 이 標準分類에 따르도록 義務化하고 있다.⁷⁾

지난 1960年 當時에 世界 貿易의 約 80%를 擔當하고 있는 該當國에서 自己 나라의 商品別貿易 資料는 SITC原典에 依據하여 集計하고, 또 世界의 主要國際機關들이 SITC原典을 貿易統計報告의 土臺로 使用하기에 이르렀으나, SITC原典보다도 뒤늦게 1956年에 國際의인 關稅行政 및 關稅統計의 統一을 바탕으로 이른바 「부关税」關稅分類(BTN)가 制定되자 SITC

7) 이 勸告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는 前記한 韓國標準商品分類(KSCC)가 國內制度의으로 經濟企劃院에 依해 制定(1964年)된 것이다.

原典과 BTN을 兼用하거나, BTN만을 단독으로 採用하는 나라들이 漸增하게 되어⁸⁾ 兩者
의 關聯이 대단히 密接해질 수 있는 分類가 되도록 SITC原典이 SITC改訂版(1960年)으로
再分類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SITC의 分類는 十進分類法에 依한 完全한 垂直的分類로 總45,000種의 貿易商品을 1,312
個의 基本項目(Basic Item)에 分類(細細分類)하고, 基本項目을 625個의 細群(Sub-Group)
으로 細群은 177個의 群(Group)으로 小分類, 群은 86個의 類(Division)로 中分類, 類는 다
시 10個의 部(Section)로 大分類하고 있으며 그 代表的인 10個의 大分類(Section)와 體系는
다음과 같다.

- 0部(Section 0) 食料品 및 犬 動物
- 1部(Section 1) 飲料 및 煙草
- 2部(Section 2) 非食用 原材料(礦物性 燃料제 외)
- 3部(Section 3) 矿物性燃料, 潤滑油 및 이와 類似한 것
- 4部(Section 4) 動物性 또는 植物性油脂
- 5部(Section 5) 化學製品
- 6部(Section 6) 原料別製品
- 7部(Section 7) 機械類 및 運搬用機器
- 8部(Section 8) 雜製品
- 9部(Section 9) 特殊取扱品

위의 大分類의 各項目에서도 알 수 있듯이 SITC의 特徵은 貿易商品의 種類別, 組立段階
別, 產業源泉別分類에 있으며, 經濟分析을 위한 統計作成이 便利하도록 되어 있다. 즉 經
濟分析 내지 貿易分析을 하는데에는 食料品, 原料, 化工藥品, 機械 및 運搬具와 같이 種類
別로 나타내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組立段階別 및 產業源泉別(industrial origin)로도 區分
해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크게는 原料品, 中間製品, 完製品등의 集團으로 綜合되고 있
다. 따라서 SITC는 SITC 改訂版의 序文 첫머리에 明示되듯 全的으로 『經濟分析과 商品
別貿易資料의 國際比較를 容易하게 하는데 必要한 商品統計를 提示하기 위한 것』에 그 目
的이 있게됨은 물론이다. 다만 品目分類에 대한 註解가 자세하지 않고 適用限界가 상세히
明示되어 있지 않으며, 分類項目의 名稱이 簡略하게만 表記되어 있어 잦은 錯誤發生의 原
因이 되고 있는 것으로 指摘되어진다.⁹⁾

8) 이를테면 EC를 中心으로 한 歐羅巴諸國의 大部分은 BTN만에 依據하고 있으며, 「스칸디나비아」
諸國과 中南美諸國에서는 SITC와 BTN을 兼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9) 바로 그러한 理由에 依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1년부터 關稅貿易行政의 商品分類는 財務部主
管으로 BTN에 依存하고, 貿易去來行政의 商品分類는 商工部主管으로 SITC에 依據하면 二元
化體制를 BTN體制로 一元화시켰다. 이러한 BTN 一邊倒體制에의 轉換은 물론 行政의 統一을

〈圖 2〉 SITC의 分類體系

10 Section (大分類)	56 Division (中分類)	177 Group (小分類)	625 Sub-Group (細分類)	1312 Basic Item (基本分類 : 細細分類)
0 食料品 및 산 動物	00 犬 動 物	001 犬動物	001.1 牛 001.2 羊 및 山羊 001.3 豚 001.4 家禽 001.5 馬 001.6 其他動物	
	01 鳥獸肉類 및 그 調 製品	011 鳥獸肉類	011.1 牛肉 011.2 羊 및 山羊의 肉 011.3 豚肉 011.4 家禽 및 그 肉 011.5 馬肉 011.6 肩肉 및 內藏 011.8 其他	011.81 家禽의 肝臟 011.82 其他
↓ 9 特殊取扱品	↓ 其他食料 ↓ 09 調製品	↓ 其他鳥 ↓ 013 獸肉類		

그러한 錯誤를 解消하기 위해서는 SITC改訂版이 BTN과의 兼用을 돋기 위해 BTN에서 내려진 定義나 解說을 SITC에도 適用할 수 있도록 改訂되었기 때문에 適用限界가 애매해 질 경우 따로 BTN의 說說書 내지 註釋을 追從해야 하는 煩雜性이 뒤따르게 된다. 하지만 經濟統計나 貿易統計의 體系의 作成을 위한 唯一한 貿易商品分類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SITC뿐이다.

(2) 「부烟花爆」 關稅分類(B.T.N.: Brussel's Tariff Nomenclature)

正式名稱이 『關稅率表에 있어서 商品分類를 위한 品目表에 관한 協約』(The Convention on Nomenclature for Classification of goods in Customs Tariffs)인 BTN은 世界各國의 關稅行政을 改善하고 그 統一化를 圖謀하고자 1950年에 「부烟花爆」(Brussel)에서 創設된 國際機構인 關稅協力理事會(Customs Cooperaton Council)가 우선 商品分類의 國際的 統一을 期하기 위하여 1955年에 制定한 商品分類이다. 즉 關稅의 手續이 各國에 따라 相異하면 할수록 國際貿易上障礙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觀點에서 그 統一化가 模索된 制度的分類의 하 나이다. 물론 國際的으로 移動되는 貿易商品을 하나의 統一된 方式에 의해 分類하고 番號를 賦與함으로써 貿易去來를 容易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비단 BTN方式에 依한 分類만이 아닌 目的이 아니고 SITC를 비롯한 모든 貿易分類方式의 目的이라 할 수 있으나 BTN은 어디까지나 그 直接的인 目的이 關稅의 合理的인 賦課에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期한다는 점에 그 主된 理由의 하나가 있다 하지만, 그 以外에도 後衛하게 되는 것과 같은 分類番號의 故意的인 誤記에 依한 關稅逋脫防止와 密輸防止에도 그 큰 比重이 주어진 것으로 알려져 고 있다.

따라서 그以外에도 ① 關稅率表上의 商品分類에 있어 共通型을樹立할 수 있고 ② 國際間去來商品에 대한 各國의 規制와 稅率의 比較가 容易하고 ③ 通商 및 關稅率에 관한 國際間의 交涉을 簡素化할 수 있고 ④ 各國의 商品分類에 있어 最大限의 統一性을 各國政府와 貿易業者에게 賦與할 수 있어 國際貿易이 圓滑해질 수 있다는 것은 그間接의 目的이 되는 셈이다.

1970年 現在로 BTN協約에 加盟한 나라는 29個國이지만 非加盟國도 BTN을 採擇할 수 있어 그採擇國總數는 100餘個國에 達하며 1967年 實績으로만도 世界總輸入額의 約 75%상당이 BTN 方式을 따르고 있다는 計算이다.¹⁰⁾ 關稅協力理事會(C.C.C.)의 會員國인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62年에 關稅率表의 品目分類(財務部主管)를 이 方式에 따라 採擇하고 있으며, 關稅行政上의 貿易規制를 앞세우는 大部分의 國家에서는 SITC方式에서 BTN方式으로 옮겨가는 頻度가 매우 잣아지고 있는 趨勢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BTN의 分類體系는 SITC의 경우와는 달리 總分類品目數에 있어 約 60,000種을 21個의 部(Section)로 大分類하고, 그것을 99個의 類(Chapter)로 中分類하며, 다시 그것을 1,097個의 項(Heading)으로 小分類하는 大·中·小의 3分類만으로 形成되었으며, 採擇國家가 自國實情에 맞도록 그 以下의 各項(Heading)을 다시 細分類할 수 있도록 한 分類方式이다. 一例로 21個의 各部(Section)에 大分類된 代表의 品目과 그 體系는 다음과 같다.

- 1部(Section 1) 動物 및 動物性生產品
- 2部(Section 2) 植物 및 植物性生產品
- 3部(Section 3) 動·植物性의 油脂 및 同分解生產物, 調製食用脂와 動·植物性의 蠟
- 4部(Section 4) 調製食料品, 飲料, 알콜, 食醋 및 煙草
- 5部(Section 5) 鑛物性生產品
- 6部(Section 6) 化學工業(關聯工業包含)生產品
- 7部(Section 7) 人造樹脂, 人造「플라스틱」, 「세루도오스·에스텔」, 天然고무, 合成고무, 「회티스」 및 同製品
- 8部(Section 8) 皮革, 毛皮와 同製品, 馬再 및 旅行用具, 「핸드·백」, 其他 이와類似한 容器
- 9部(Section 9) 木材와 同製品, 木炭, 「코오코」 및 同製品과 竹(葦) 「에스파토」, 其他의 組物材料의 製品과 簡細工物 및 技條細工物
- 10部(Section 10) 製紙用原料와 紙, 板紙 및 同製品

10) 島田記史雄·飯島義郎, 商品學講義, 青林書院新社, 1972. p. 55.

- 11部(Section 11) 紡織用纖維 및 同製品
- 12部(Section 12) 신발類, 모자, 衣類, 지팡이, 매(鞭)와 同部分品 및 調製羽毛, 羽毛製品, 造花, 人髮製品과 부채
- 13部(Section 13) 石, 石骨, 「시멘트」, 石綿, 雲母, 其他 이와 類似한 材料의 製品, 陶磁製品과 유리 및 同製品
- 14部(Section 14) 真珠, 貴石, 半貴石, 貴金屬, 貴金屬을 부친 金屬을 부친 金屬 및 同製品, 模造身邊用品과 貨幣
- 15部(Section 15) 卓金屬과 同製品
- 16部(Section 16) 機械類, 電氣機器 및 同部分品
- 17部(Section 17) 車輛, 航空機器 同部分品 및 船舶과 輸送機器關聯品
- 18部(Section 18) 光學機器, 寫真用機器, 映寫用機器, 計測機器, 精密機器, 醫療用機器, 時計, 樂器, 錄音機, 音聽再生機, 「텔레비죤」의 映像 및 音聽의 磁氣式의 記錄機와 再生機 및 同部分品
- 19部(Section 19) 武器, 銃砲彈 및 同部分品
- 20部(Section 20) 雜品
- 21部(Section 21) 美術品, 蕔集品 및 骨董品

이러한 分類에서 알 수 있듯이 BTN에 있어서의 商品分類의 特徵은 SITC에 있어서의 種類別, 組立段階別 및 產業源泉別에 따른 商品分類와는 달리 ① 原料를 中心으로 한 分類 ② 製造過程을 中心으로 한 分類 ③ 勞動過程을 中心으로 한 分類 ④ 用途를 中心으로 한 分類를 總合的으로 考慮한 分類에 있다. 즉 BTN은 그 分類基準에 商品의 素材, 成因, 機能, 用途를 適宜混用하는 分類이다. 이것은 모든 貿易商品을 包含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며, 또 實務上의 基準이기 때문에 油象的인 分類基準이 전혀 許諾되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原料製品과 거기에서 派生되는 中間製品이나 完製品과 같은 種類의 商品은 되도록 같은 部(Section)로 一括表示되며, 같은 種類의 商品일지라도 組立段階別 내지 產業源泉別에 따라 各已 다른 部에 收容되는 SITC의 경우와는 對照的이다.

또 위에 羅列된 21部의 品目에서도 알 수 있듯이 部數가 높아짐에 따라 原料에서 出發해서 段階的으로 高次加工品에 이르고 있으나 그것은 關稅의 設定에 便宜를 주기 위해서이다.

한편 BTN은 品目適用上의 分類通則과 規制力を 가지는 자세한 註解가 있음으로 最大限의 容易性과 精密性 내지 適用上의 正確性을 期할 수가 있으며, 分類項目마다 適用되는 公式解說書(BTN Explan-story Note)가 있어 便利하다. 다만 一國의 經濟分析이나 國際的인

〈圖 3〉 BTN의 分類體系

21 Section (大分類)	99 Chapter	(中分類)	Heading (小分類)
Section 1(部) 動物 및 動物性 生產品	Chapter 1(類) 犬動物	Heading (項)	01.01 산 말(馬)… 01.02 산 소(牛) 01.03 산돼지(豚) 01.04 산양 및 山羊 01.05 산 家 禿 類 01.06 其他山動物
	Chapter 2 肉類 및 食用肩肉	Heading	02.01 02.02 02.03 02.04 02.05 02.06
	Chapter 3 魚類, 조개類 및 軟體動物類	Heading	03.01 03.02
	Chapter 4	Heading	03.03
	Chapter 5	Heading
Section 2 植物 및 植物性 生產品	Chapter 6	Heading
	↓ Chapter 14	Heading
Section 3 動・植物性의 油脂.....	Chapter 15	Heading
Section 4 調製 食料品	Chapter 16	Heading
	↓ Chapter 24	Heading
Section 21 美術品, 蔵集品 및 骨董品	Chapter 99	Heading	99.01

經濟分析을 통한 會計資料의 作成과 國際比較를 위해서는 SITC가 보다合理的이며 體系的인 것은 물론이다.

1971年 1月 1日부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貿易에 依한 商品分類는 貿易政策의으로 商工部가 SITC에 依據主管해 왔었으며, 關稅에 依한 商品分類는 關稅政策의으로 財務部가 BTN에 依據主管했던 二元化體制를 BTN方式으로 統一・調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經濟分析 내지 貿易分析의 統計作成과 國際比較가 容易한 SITC體制에서 하필 關稅의合理的인 賦課・徵收가 主目的인 BTN體制로 移行하게 된 理由로는 혼히

- ① 關稅政策과 貿易政策間의 相互比較와 調和를 容易하게 하는 점
- ② 國際間에 貿易과 關稅의 比較와 交涉이 容易한 점
- ③ 品目分類의 正確성을 期할 수 있다는 점

④ 輸出入承認, 通商 및 關稅業務上 統一性을 期할 수 있다는 점
⑤ SITC와 BTN解釋上 差異로 因한 輸出入商品通關上의 煩雜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이 標論되기 쉽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開發途上國이라는 우리나라의 立場에서는 SITC方式의 導入에 따라 빈번히 惹起되어 온 것으로 믿어지는 『……輸出入商品通關上의 煩雜』(즉 關稅逋脫防止와 密輸防止)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다시 말해서 國家歲入財政上의 암적인 存在를 摘出하고 貿易行政上의 混亂을 解消하기 위해서는 BTN體制에의 移行이 不得已했었다는 것이 그 表面的인 衆論이라는 뜻이기도하다.

그 一例를 들기 위해 우선 SITC方式과 BTN方式을 「잉크」라는 貿易商品을 中心으로 比較的으로 例示하면 다음의 <表 3>과 같아진다.

즉 「잉크」가 BTN에는 같은 分類番號인 32.13 (Heading)의 하나로 表示되는데 반해 SITC에는 533.2(Sub-Group)의 「印刷用잉크」와 895.91(Basic item)의 「잉크」(印刷用을 除外한 「잉크」로 兩分되어 表記된다. 같은 屬性을 지닌 「잉크」인데도 SITC에서 兩分・表記되는 까닭은 SITC分類體制가 商品自體를 加工與否段階別로 原料 내지 中間製品 및 完製品등의 「카테고리」로 區分하기 때문이다. 즉 같은 「잉크」라도 印刷用「잉크」는 原料 내지 中間製品으로 看做되어 5部(Section 5)의 化學原料製品(Chemicals)에 收容되며, 印刷用을 除外한 其他「잉크」는 完製品으로 看做되어 8部(Section 8)의 雜製品(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에 收錄되는 까닭에 서이다.

이처럼 SITC에서는 經濟分析과 貿易分析의 目的性格上 原料, 中間製品, 完製品과 같은 範疇대로의 種類別, 組立段階別, 產業源泉別分類가 特徵的인 데 반해 BTN은 關稅政策의 인觀點에서 同一系統의 商品은 모두 總括해서 같은 分類番號인 類(Chapter)나 項(Heading)에 包含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BTN에서는 部(Section)가 21個部로 나누어져 있지만 實際의인 意味에서는 獨立된 固有分類番號가 없는 것도 SITC의 경우처럼 「잉크」라면 化學製品인 原料로써의 「잉크」와 完製品으로서의 「잉크」로 각각 다르게 分類됨으로서 빚어지는 混亂과 錯誤를 解消하기 위해서임은 물론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一部 貿易業者들이 SITC方式의 그러한 盲點을 惡用함으로서 貿易 및 關稅行政上의 混亂만을 加重시키는 結果를 가져오게 되어不得已 BTN體制로 移行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立場이 造成되기에 이른 것이다.例컨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完製品의 輸入은 大部分 全面的인 輸入禁止 내지 高額關稅賦課에 따른 輸入制限이 되고 있는데 原料나 中間製品일 경우 별로 輸入上制限을 받게 되는 品目이 없어 比較的 低額關稅로 輸入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輸入禁止措置가 取해진 完製品(雜製品=Section 8)

〈表 3〉 兩分類體系에 依한 「잉크」의 表示方法 比較

B T N		S I T C	
Code No.	分類品目名	Code No.	分類品目名
32.13	印刷用잉크, 筆記用잉크 및 其他 의 잉크 1. 印刷用잉크 2. 筆記用잉크 3. 墨과 墨汁 4. 其他	533.2	印刷用잉크 1. 印刷用色素 2. 石版用잉크 3. 石版用黑잉크 4. 印刷用着色잉크
		895.91	잉크(印刷用잉크를 除外) 1. 複寫用잉크 2. 圖畫用잉크 3. 複寫機用잉크 4. 筆記用초크 5. 圖畫用木炭 6. 陶磁製크래용 7. 石墨製크래용 8. 油製크래용 9. 파스텔 10. 鉛筆의 芯 11. 石版用크래용 12. 木岸鉛筆 13. 鉛筆(샤프펜슬을 除外) 14. 石筆

으로서의 筆記用「잉크」를 印刷用「잉크」로 假裝시켜 原料로서의 化學製品(Section 5)으로 分類된 番號를 賦與시킴으로서 高額關稅의 通脫과 密輸를 자행하는 事例가 頻發하게 되는 것은 너무도 自明한 일일 것이다.

3. 結 言

결국 그러한 意味에서도 貿易商品去來의 實質面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大多數의 國家들이 貿易商品分類에 BTN에 依한 分類方式을 採擇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現實이다. 그러나 理論과 實際의 兩面에서 그 研究對象인 貿易商品을 體系的으로 究明하기 위한 貿易商品論의 立場에서는 한낮 關稅의 合理的인 賦課가 그 究極的인 目的인 BTN體制를 貿易商品分類와 基盤으로써 導入해야 할 아무런 理由는 없다.

SITC가 비록 品目分類에 대한 註解가 자세하지 않고 適用限界가 상세히 明示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各國의 貿易商品의 分析 내지 經濟分析을 위한 統計作成에 便利할 뿐만

아니라 分類體系가 Dewey의 十進分類法에 依한 科學的인 垂直分類라는 점에 그 價值가 크다. 특히 貿易商品論에서의 本命인, 世界各國에서 去來되는 貿易商品의 國際比較를 容易하게 하기 위한 가장 合理的인 分類體制는 아직 까지는 오직 SITC 하나뿐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實際面에서 그렇고, 또 學究面에서도 BTN分類體制를 따라야 한다면 貿易商品論의 學問的인 性格마저 터무니 없이 흐려지게 마련이다. 때문에 關稅賦課라는 實際面에서만 便利하고 體系的이며 學究的인 研究에서는 그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BTN方式을 貿易商品論의 立場이라해서 追求해야 할 아무런 理由도 물론 없을 것이다.